

① 軍人·警察等에 대한 二重賠償禁止規定의 合理的調整

- 理行 : §28② (二重賠償禁止)

②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 正當 : §28② (合理的調整)

②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을 請求할 경우의 賠償 基準과 方法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取消 : 削除 (二重賠償規定)

현재 軍人·警察公務員 등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는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 등에 의하여 年金·生活調整手  
當·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死亡一時金 등 충분한 報償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報償외에 國家賠償까지 인정하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이중으로 賠償하게 되어 國家財政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課稅負擔을 과중시키게 되므로  
현재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임.
- 그러나 앞으로의 國家財政能力의 증대추세를 감안하고 國家를  
위한 職務遂行으로 인한 犧牲에 相應하는 報償을 충분히 받  
도록 하기 위하여 國家賠償請求를 허용하되
- 다만, 그 財源마련은 國民負擔으로 직결되며, 또한 軍人·警察  
등이 戰鬥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에는 上級者인 公務員의 不法  
行爲가 없었으므로 報償외에 國家賠償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作業으로 인한 死亡등과 衡平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이미 받은 報償額을 감안하여 그 差額만 추가로 賠償  
받을 수 있게 함.